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8. 30.  
북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8.22. 이동주 의원 외 14명
- 나. 회부일자 : 2016.8.22.
- 다. 상정일자 : 제20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6.8.30.)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이필례 의원

### 가. 제안이유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가 발생 할 시 주변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 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바 우리구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필요한 구민에게 심폐소생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응급 상황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3)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 및 교육(안 제4조~제5조)
- 4) 심폐소생술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안 제6조)
- 5) 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및 사후관리(안 제7조~제8조)

###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음.

○ 서울시의 심정지 환자는 2010년 대비 2014년 46.6% 증가(3,511명→5,151명)하여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 심폐소생술 시행율은 2014년 기준 21.4%이나 스웨덴 55%와 일본 34% 등 선진외국의 33%~55%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심정지 환자의 60% 이상이 가정 등 비공공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선진국 수준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심폐소생술 시행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